창원RE100 시민클럽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13 기후변화와 대응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 1 차 정 기 (서면) 총회

ecoop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자료 순서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경과 보고

◆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부록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언론보도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100주년 총회에서 발표(1995년)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한다.
제4원칙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한다.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경과 보고

년 도	일 정	내 용
2021년	09월 06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협약식(창원시, 경남에너지, 협동조합)
	09월 28일	발전사업신청서류 제출(창원시 경제살리기과)
	10월 06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창원시 마산회원구청)
	10월 07일	경상남도청년활력사업 공모신청
	11월 04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옥상 시공 설명회
	11월 11일	한국전력 PPA 신청
	11월 17일	아이솔라 옥상실측
	11월 22일	사업설명회(창원시청 2층 시민홀)
	12월 06일	전기사업허가 신청 서류(공사계획서) 제출
	12월 07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나무 가지치기
	12월 09일	태양광 발전소 자재 입고
	12월 12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보강작업 및 안전 난간 작업
	12월 13일	착공식
	12월 15일	태양광 발전소 1호기 솔라루프 설치
	12월 16일	
	12월 18일	태양광 발전소 1호기 솔라루프 설치 완료
	12월 20일	RPS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체결
	12월 22일	한국전력 전기연계 공사
	12월 23일	태양광 발전소 1호기 전선 배치 완료
	12월 24일	태양광 발전소 1호기 사용 전 검사 완료
	12월 30일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솔라루프 설치
	12월 31일	
2022년	01월 05일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REC 전자계약 서류 제출
	01월 06일	태양광 발전소 KNN뉴스 인터뷰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태양광 패널 인양
	01월 14일	안산단원신협 대출
	01월 18일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솔라루프 설치 완료
	01월 21일	헬로이슈토크 이사장님 TV녹화
		태양광 발전소 내 인터넷 설치 및 전기 패널 설치
	01월 23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떨어진 녹 정리
	01월 24일	태양광 발전소 앞 펜스 설치
	01월 25일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사용 전 검사 완료
	02월 03일	펜스 내 스텐 사다리 설치
	02월 09일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REC 계약 체결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1년 사업과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2항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7조(결산 등)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1. 2021년 감사보고서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감사 보고서]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 및 총회 귀하

본 감사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사업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지출결의서상의 금액과 통장 지출거래 내역,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의 감사 결과, 상기 재무제표 등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이익나눔형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감사 이 상 준 (서명 또는 인)

제2호 의안.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2항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제67조(결산 등)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 2021년 사업 보고 및 결산

1. 사업 추진 보고

1) 창립총회

❍일　시: 2021. 8.29(일) 오후 5시
❍장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 5번길 28(신월동)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종훈, 유현석, 이상준
❍안　건: 정관승인, 임원선출,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결　정: - 제출 정관으로 확정
- 안명선 이사장,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사선출, 이상준 감사 선출
- 2021년 사업계획(안), 수입·지출예산(안) 확정
- 사전 설립 경비 이사장 사용 후 경비 처리키로 함.

2) 이사회

□ 1차 이사회의

❍일　시: 2021년 10월 11일(월) 18시
❍장　소: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상준
❍안　건 1) 발전소 건립 추진계획
2) 배당논의
❍결　정 1) 발전소 건립 예정공정표의 일정 확인 후 사업진행
2)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계약 준비
3) 총 사업비 중 4억 대출, 대출금액 변동에 따라 조정
4) 출자배당 최대 5% 목표로 내년 초 총회에서 확정, 연도 내 추가 출자에 대한 배당은 출자 일수에 비례하여 배당

□ 2차 이사회의

❍일　시: 2021년 10월 25일(월) 19시
❍장　소: 온라인 zoom 회의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상준
❍안　건 1) 2021년 하반기 고정가계약 경쟁입찰
2) 대출논의
❍결　정 1) 2021년 하반기 고정가계약은 이규철 이사가 역할을 맡아 진행

2) 안산신협에서 대출 진행, 대출시기는 12월 초 공사와 더불어 총 사업비의 70%를 대출

□ **3차 이사회의**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19시
❍장 소: 온라인 zoom 회의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상준
❍안 건 1) 사업설명회 일정 및 내용 논의
2)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결 정 1) 설명회 일시는 21.11.22(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추후 논의
2) 설명회 시 수입구조, 배당원칙 등은 이규철 이사, 이사회 소개는 전체, 인사 말씀은 안명선 이사장이 하기로 함. 홍보 방법은 블로그 등을 이용
3)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통한 지원은 조건이 맞지 않아 못함

□ **4차 이사회의**

❍일 시: 2021년 11월 15일(월) 19시 30분
❍장 소: 온라인 zoom 회의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상준
❍안 건: 1) 사업설명회 준비 상황 공유
❍결 정: 1) 이사장 인사와 부시장님 축사 발기인 소개 순으로 진행

□ **5차 이사회의**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9시
❍장 소: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
❍참석자: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이상준
❍안 건 1) 1~4호기 발전소 건립 공사계획 일정 및 공사진행 현장 담당 논의
2) 1~4호기 발전소 건립 공사비마련 방안 논의
❍결 정 1)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FIT신청, 2022년 초 설비확인 끝내면 에너지 공단, 전기안전검사 일정 확인이 안되어 신청 미리 하기로 함
2) 착공식 일시는 21.12.07(오전 10시 30분), 이사장 인사말씀, 공사계획 이규철 이사, 펀드 설명 이상준 이사가 하기로 함
3) 펀드는 펀드 모금 완료 시 펀드 모집 종료, 한도 없이 목표 금액 달성 시 종료(입금일로부터 만 2년으로 펀드 기간을 명시)

3) 연대 활동 및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

❍일　시: 2021.11.30(수) 15시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회의실(AREX-2)

❍참석자: 이창수 회장 외　25인

❍안　건: 정관 확정 및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설립 경비 등 기타 경비

❍결　정: 원안대로 확정

2. 2021년 회계 결산 보고 (회계년도 2021.09.14. ~ 2021.12.31.)

창원시민에너지 협동조합 사업결산 보고서

(앞쪽)

회계연도 : 2021년도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121,323,530	**Ⅰ. 유동부채**	499,735,350
(1) 당좌자산	121,323,530	- 미지급금	496,110,000
- 외상매출금	33,890,000	- 예수금	87,590
- 보통예금	35,257,844	- 가수금	4,400
- 미수금	52,175,686	- 미지급 세금	3,533,360
- 선급금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부 채 총 계	**499,735,350**
Ⅱ. 비유동자산	560,000,000	**자본**	
(1) 투자자산		**Ⅰ. 자본금**	153,000,000
- 장기성예적금		- 조합원출자금	153,000,000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560,000,000	**Ⅲ. 자본조정**	
- 비품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560,000,000	**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8,588,180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3,000,000
(3) 무형자산		- 임의적립금	0
- 특허권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28,588,180**
- 임차보증금		당기 : 28,588,180원	
		전기 : 0원	
		자 본 총 계	181,588,180
자 산 총 계	**681,323,53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81,323,530**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Ⅰ. 매출액	**39,899,999**	**Ⅵ. 영업외수익**	**60,945**
- 영업 마케팅	39,899,999	- 이자수익	1,070
		- 지원금	
		- 후원금	
Ⅱ. 매출원가	0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59,875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Ⅲ. 매출총손익	39,899,999	**Ⅶ. 영업외비용**	0
Ⅳ. 판매비와관리비	7,839,404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1,920,000	- 기부금	
- 퇴직급여	0	- 잡손실	
- 상여금	0	-	
- 복리후생비	105,040	**Ⅷ. 법인세차감전손익**	32,121,540
- 여비교통비	207,100	**Ⅸ. 법인세등**	3,533,360
		Ⅹ. 당기순손익	28,588,180
- 통신비	49,120		
- 사무운영비	2,361,720		
- 발전사업비	2,523,424		
- 홍보사업비	673,000		
Ⅴ. 영업이익	**32,060,595**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당)기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121,323,530
(1)당 좌 자 산		121,323,530
보 통 예 금		35,257,844
외 상 매 출 금		33,890,000
부 가 세 미 수 금		52,175,686
(2)재 고 자 산		0
Ⅱ.비 유 동 자 산		560,000,000
(1)투 자 자 산		0
(2)유 형 자 산		560,000,000
건 설 중 인 자 산		560,000,000
(3)무 형 자 산		0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자 산 총 계		681,323,530
부 채		
Ⅰ.유 동 부 채		499,735,350
미 지 급 금		496,110,000
예 수 금		87,590
가 수 금		4,400
미 지 급 세 금		3,533,360
Ⅱ.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499,735,350
자 본		
Ⅰ.자 본 금		153,000,000
출 자 금		153,000,000
Ⅱ.자 본 잉 여 금		0
Ⅲ.자 본 조 정		0
Ⅳ.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Ⅴ.이 익 잉 여 금		28,588,180
미 처 분이익잉여금		28,588,18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28,588,180 원		
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181,588,1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81,323,530

손 익 계 산 서

제 1(당)기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당)기	
	금 액	
Ⅰ. 매 출 액		39,899,999
서 비 스 매 출	39,899,999	
Ⅱ. 매 출 원 가		0
Ⅲ. 매 출 총 이 익		39,899,999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7,839,404
직 원 급 여	1,920,000	
복 리 후 생 비	105,040	
출 장 비	207,100	
통 신 비	49,120	
홍 보 사 업 비	673,000	
사 무 운 영 비	2,361,720	
발 전 사 업 비	2,523,424	
Ⅴ. 영 업 이 익		32,060,595
Ⅵ. 영 업 외 수 익		60,945
이 자 수 익	1,070	
잡 이 익	59,875	
Ⅶ. 영 업 외 비 용		0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32,121,540
Ⅸ. 법 인 세 등		3,533,360
법 인 세 등	3,533,360	
Ⅹ. 당 기 순 이 익		28,588,18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당)기 2021년 09월 14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02월18일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1(당)기	
	금 액	
Ⅰ.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8,588,180
1. 전 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5. 중 간 배 당 금	0	
6. 당 기 순 이 익	28,588,180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입액		0
1.	0	
2.	0	
합 계		28,588,180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3,000,000
1. 이 익 준 비 금	3,000,00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3. 배 당 금	0	
가. 현 금 배 당	0	
나. 주 식 배 당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5. 감 채 적 립 금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Ⅳ. 차 기 이 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588,180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2-03-03 10:19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Ⅰ. 2022년도 사업계획

▢ 사업방향

○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보급을 통한 이익공유 및 탄소배출 저감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 양성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모색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및 조직활동 전개(RE100 시민클럽)
○ 조합원 소통 강화 및 교육, 참여를 통한 조합원 역량 증진
○ 지역사회 및 전국 네트워크 참여 등 연대활동을 통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

▢ 주요사업

1. 창원시민발전소 1-4호기 운영 및 유지 관리

- 발전소 문제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관리책임자 및 연락망)
- 여름철 태풍 등 위험상황 대비 대응 매뉴얼 구비
- 발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조합원과의 소통 체계 구축(월별 발전량 등)
- 유지관리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 신규 발전소 건설 추진

- 창원공단 등 공장지붕 태양광발전소 설치 확대를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
- 타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사업
- 2022년 추진목표 : 200kW

3. 조합원 교육

1) 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의 이해 및 정관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정기적인 신규조합원 교육 계획 수립

2)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조합원을 포함한 대중교육으로 실시

- 소규모 풍력발전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안내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4. 창원RE100 시민클럽

- RE100시민클럽 창원네트워크 발족
- RE100시민클럽 화이트 1,000명, 그린 100명, 블루 100명 확대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카드뉴스, 리플렛 등)
- 에너지의 날 행사 등 경남지역 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

6. 협력사업 및 기타제안 사업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가입 및 경남지역 시민발전협동조합과의 협업 추진
- 창원시협동조합협의회 가입 등 지역 협동조합과의 협력

Ⅱ. 2022년도 예산안

수 입 (단위: 원)		비 용/지 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단위:원)	계정 과목	항	목	산출 내역	금액 (단위:원)
[손익예산]						
발전수익	150,000,000	사업비	발전소 유지 관리	보험료, 임대료 등	임차료 579,000 보험료 1,800,000 안전관리 3,696,000 유지관리 3,200,000	10,000,000
영업 지원금	30,000,000		감가 상각비	비현금 지출비	정액법 20년 상각	30,000,000
일자리 지원금	1,000,000		조직 사업	조합원 교육비	강사비200,000원×5명	1,000,000
				회원 관리비	100,000원×10회	1,000,000
			이사 활동비	회의비	200,000원×10회	2,000,000
			출장비	출장비	200,000원×15회	3,000,000
		관리비	사무 운영비	제세공과	5,000,000원×1식	5,000,000
				사무관리		3,000,000
				임차료		5,000,000
			통신 발송비	우편, 택배	1,000,000원×1식	1,000,000
				전화 등		1,000,000
			홍보비	인쇄, 신문 등		8,000,000
		인건비	급여 보험료	급여, 건강보험	2,500,000원×12월	30,000,000
		이자	신협 대출	20년 분할상환	431,200,000×2.5% 200,000,000×4.0%×1/2	13,654,000
			펀드		29,000,000×4.5%	1,305,000
(수익 계)	181,000,000	(비용 계)				114,959,000
		세전 순이익				66,041,000
		당기순이익		1억이하	세금 7,264,510(11%) 공제	58,776,490
[자금예산]						
법정적립금	3,000,000	법정적립금		적립누계	2022년분 9,000,000 추가	12,000,000
이월잉여금	25,588,180	발전소 건립비		신규건립	2022년 추가건립비	280,000,000
당기순이익	58,776,490	대출 상환 (원금)	신협	기존대출	대출상환표에 따름	20,130,000
				22년신규	추정금액	5,000,000
감가상각비	30,000,000		펀드	23년초		29,000,000
신규출자금	100,000,000	배당	출자	기본	기존분: 출자금 2억×5% 신규분: 출자금 1억×5%×1/2	12,500,000
신규차입금	200,000,000		참여	실적	출자배당액 이상(정관 69조②)	12,500,000
		이월자금			2023년 펀드상환·배당 후	46,234,670
(수입 계)	417,364,670	(지출 계)				417,364,670

부록

1.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2.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언론보도
3.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관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 (2022.3.4.)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1	허성무	31	정혜란	61	김성진	91	이인순
2	정 회	32	김태순	62	김태융	92	이상욱
3	서영옥	33	김남희	63	김주희	93	김국태
4	안명선	34	이유정	64	최선호	94	구봉은
5	김연옥	35	공치완	65	이숙희	95	최정운
6	이규철	36	공봉식	66	이민주	96	권혜반
7	이상준	37	신혜경	67	고수옥	97	공치현
8	유현석	38	최성윤	68	김세화	98	김정숙
9	이종훈	39	전수광	69	노경진	99	유은주
10	강보순	40	최웅기	70	강철규	100	이은경
11	전홍표	41	최선호	71	옥영환	101	지민안
12	백호경	42	정수원	72	박현수	102	허환구
13	임종만	43	정미나	73	강진식	103	서양희
14	이찬원	44	여미경	74	윤미영	104	서혜림
15	문미경	45	이근형	75	손종근	105	신민호
16	오수미	46	황혜정	76	김선희	106	김광태
17	박종권	47	신영규	77	장진석	107	박전임
18	박경숙	48	최종선	78	이덕자	108	나혜진
19	이명숙	49	정보현	79	허옥기	109	서현란
20	최지수	50	이규용	80	서영수	110	이지언
21	김명용	51	전세준	81	오장환	111	(유)에코힐링
22	신화근	52	전도겸	82	한정희	112	김상준
23	윤한진	53	전주원	83	김복남	113	김순점
24	성지수	54	최영림	84	이춘수	114	배순형
25	김현정	55	심정이	85	변기수	115	배경린
26	조지민	56	지종근	86	정순태	116	김석화
27	박성관	57	박민찬	87	장우숙	117	이진희
28	이정근	58	임화성	88	박만희	118	정은희
29	이상구	59	설미정	89	전선숙	119	서명호
30	강승현	60	박옥엽	90	양지운	120	전점석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121	조명숙	151	강미향				
122	최성희	152	박병열				
123	임채삼	153	조혜리				
124	이상용	154	이재영				
125	최순둘	155	김상찬				
126	주용옥	156	이우완				
127	이진수	157	김동해				
128	손보민	158	김예은				
129	조정욱	159	박성진				
130	송지우	160	조혜미				
131	송지훈	161	윤영필				
132	안현희	162	김순자				
133	박동철	163	김한준				
134	문성용	164	공창섭				
135	윤원철	165	상화주식회사				
136	안지영	166	문희순				
137	허현숙	167	김중원				
138	손지현	168	차우용				
139	손석인	169	송봉학				
140	손우혁	170	김영남				
141	이강경	171	이광숙				
142	박미정	172	박주희				
143	문창민	173	허남숙				
144	김정숙	174	이일균				
145	이창수	175					
146	조영희	176					
147	강은경	177					
148	최윤식	178					
149	이재희	179					
150	이찬우	180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언론보도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블로그 창에협 언론보도 카테고리에서 확인

순번	내용	비고
1	'태양광발전' 창원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추진	2021. 09. 06. KBS
2	에너지 전환을 수익으로…창원시 이익나눔 태양광 발전 첫발	2021-09-06 연합뉴스
3	창원시민과 이익 나누는 태양광 발전 첫발	2021년 09월 07 경남도민일보
4	창원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익 나눔 태양광발전 첫발	2021.09.06아시아경제
5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시동'	2021.09.06 시사저널
6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첫 출발	2021-09-06쿠키뉴스
7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첫 출발 시 - 경남에너지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준), 업무 협약체결	2021.09.06.프레시안
8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추진 시민 힘모아 발전소 짓고 이익 나눔 첫 사례	2021.09.06 머니투데이
9	태양광 발전으로 창원시민에 수익 배당…허성무 시장 1호 조합원	2021-09-06 노컷뉴스
10	창원시 건물에 태양광 운영, 이익금 시민과 나눈다	2021-09-07경남신문
11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첫 출발	2021.11.22경남일보
12	창원시, 시민과 이익 나눌 첫 태양광 발전소 본격 시동	2021.11.23 이로운넷
13	창원시 제1호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명회 개최	2021-11-22 노컷뉴스
14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조합원 5% 배당금	2021.11.22아시아경제
15	창원시, 제1호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 개최	2021.11.22전기신문
16	창원시, 제1호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 개최	2021.11.22. 베타뉴스
17	창원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 개최	2021.11.22. 뉴스경남
18	창원시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2021.11.22. 한국농어촌방송
19	창원시 제1호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 개최	2021.11.22. 경남도민신문
20	창원시, 제1호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 개최	2021.11.22. LOCAL세계

순번	내용	비고
21	‘이익 나눔’ 태양광발전소 사업 설명회 열려	2021.11.23. KBS NEWS
22	창원 이익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오늘 첫삽	2021년 12월 13일 경남도민일보
23	창원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본궤도	2021-12-13 부산일보
24	창원시민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본격 출발	2021-12-13 경남신문
25	창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착공	2021.12.13. KBS NEWS
26	"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 자립하는 길"	2021년 12월 31 경남도민일보
27	시가 빈 땅 주고, 시민들 태양광 올려 ‘이익나눔’	2022년 1월 6일 KNN
28	[헬로이슈토크] 창원시, 시민과 이익 나눌 첫 태양광 발전소 본격 시동...의미는?	2022. 1. 24. 헬로티비
29	시민이 출자하고 수익 나누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02.18. 뉴스프리존
30	창원 이익나눔 태양광발전 1~4호 준공…각 100㎾ 규모	2022-02-18 연합뉴스
31	창원시,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02-18 뉴스핌
32	창원시민이 출자한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2022-02-18 BreakNews
33	창원시,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2022-02-18 베타뉴스
34	창원시 '시민 이익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준공…400KW 규모	2022-02-18 cnbnews
35	창원시,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2022-02-18 전기신문
36	‘시민 이익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창원이 시작합니다!	2022-02-18 아시아경제
37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146가구 사용 전기생산	2022-02-19 쿠키뉴스
38	창원시민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 02. 20 아투시티뉴스
39	창원에 시민 출자 태양광발전소	2022. 02. 20 부산일보
40	창원시,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개최	2022. 02. 20 경남도민신문
41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 02. 20 뉴스경남

순번	내용	비고
42	창원시민에너지 제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2022. 02. 20 경남일보
43	창원시 제1호 이익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준공…2억원 시민펀딩	2022. 02. 20 노컷뉴스
44	창원 시민이익나눔 태양광, 첫 전기 판매 눈앞	2022년 02월 21일 경남도민일보
45	시민 이익나눔형 ‘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년 02월 21일 경남신문
46	창원시민에너지 제 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2022년 2월 18일 KNN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함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며,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제반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상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자금은 가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30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각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11.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 소집후 정족수 미달시 출석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

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우선 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에너지 생산 및 판매
2.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및 관리
3.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컨설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또는 별도의 특별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부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부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경상남도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안 명 선 (인)

발기인 유 현 석 (인)

발기인 이 규 철 (인)

발기인 김 연 옥 (인)

발기인 서 영 옥 (인)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 5번길 28
T: 055-225-3479 F: 0303-0262-4275
E: cecoop21@daum.net
블로그: https://blog.naver.com/cecoop21/222576487676

[출자금 및 펀드 입금계좌 안내]

- **경남은행 207-0131-9972-06 | 예금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 **농협은행 301-0298-8067-21 | 예금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